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17일

나. 발 의 자: 김정도 · 김영태 · 장세구 의원(3인)

다. 찬 성 자: 강승수 · 김민성 · 김영길 · 소진혁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추은희 ·  
허민근 의원(11인)

라. 회부일자: 2025년 11월 19일

마. 상정일자: 2025년 11월 26일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정 도 의원

### 나. 제안이유

-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공간협소 등으로 이용의 불편이 발생되지만 경로당의 신축, 증개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산재하므로 공동주택 매입을 통해 경로당을 이전 혹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함.

-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신축의 정의 재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호)
- 매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4항)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기 타: 조례안 예고(2025. 11.19. ~ 11. 24.) 결과 의견없음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영훈

#### ○ 본 조례안은

-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노후·협소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매입해 경로당을 이전·신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안으로,

○ 검토 결과,

- ‘신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앞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매입 대상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리모델링 추진시 시설을 이용할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간 구성과 편의시설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이용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다른 주소지 경로당 명단에 잘못 포함되거나 중복으로 여러 경로당에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